

#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의 소명 매뉴얼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관련 소명자료제출은 제출기한 동안 인터넷 제출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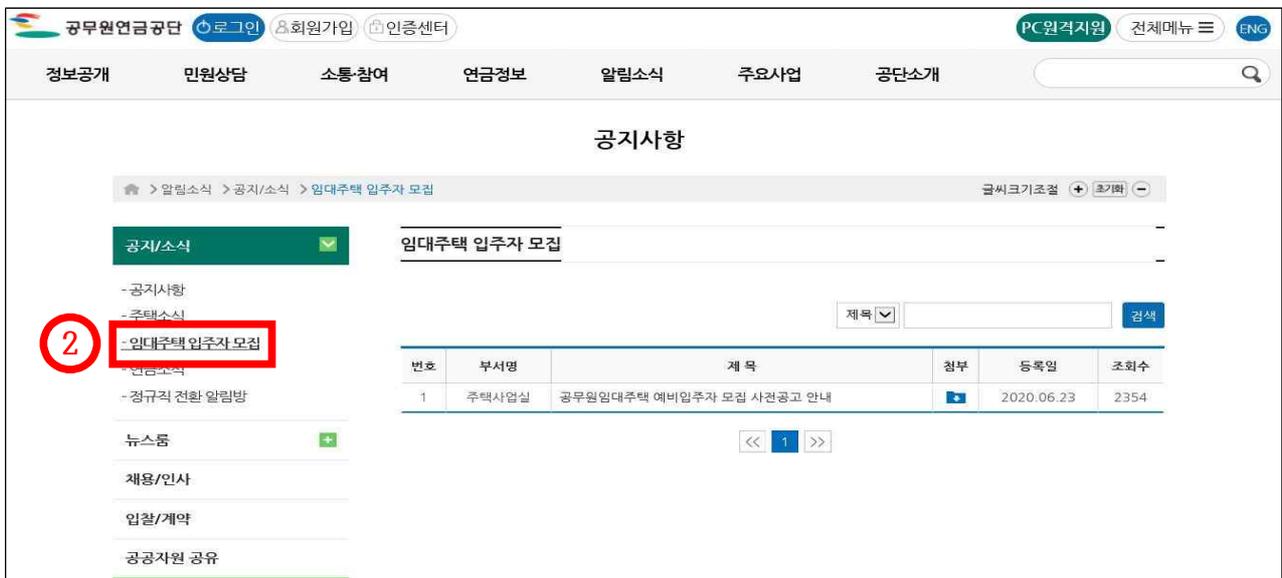
## 1.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관련 소명자료 제출 대상자 선정

-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토대로 소명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와 신청자의 휴대폰 SMS로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알림소식』→『공지/소식』→『공지사항』→『임대주택입주자모집』



- ① 『알림소식』 → 『공지/소식』 클릭
- ② 『공지사항』 → 『임대주택입주자모집』 클릭

※ 임대주택 입주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해당화면에 공지합니다



- ※ 소명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20. 7.24. 24:00)까지 시스템 업로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심사하고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지정된 파일형식 외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였거나 스캔불량 등은 가능한 경우 서류심사는 진행하나, 관련된 책임(파일 열람불가 및 육안 확인불가 등)은 신청자 본인에 귀책됨을 알려드리오니 제출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내연금보기”를 클릭합니다



## 3.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일반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4. 고객지원시스템의 상단 메뉴 중

『주택/분양/임대』→『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직접배정 신청현황관리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임대주택' (Rental Housing) menu expanded to '예비입주자 모집' (Pre-tenant Recruitment), with '직접배정 신청현황관리' (Direct Allocation Application Status Management) selected. Below the navigation is a table titled '예상퇴직급여' (Estimated Withdrawal Benefits).

퇴직연금 청구시		퇴직연금일시금 청구시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청구시	
퇴직연금[매월]	597,430	퇴직연금일시금	50,903,110	퇴직연금(10년)[매월]	456,550
퇴직수당	12,053,120	퇴직수당	12,053,120	공제일시금	10,631,110
세 액	0	세 액	1,302,790	퇴직수당	12,053,120
(주1)지급액	12,053,120	(주1)지급액	61,653,440	세 액	153,400
		(주1)지급액	22,530,830	(주1)지급액	22,530,830

(주1) 기타 공제 전 금액입니다.

#### 5. 입주신청서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직접배정 신청현황관리' page. A search filter for '본인신청여부' (Self-application status) is checked (1). The '조회' (Search) button is highlighted (2). In the search results table, the '본인신청여부' column for the first row shows 'Y' (3).

공고번호	공고명	공고일자	신청시작일시	신청종료일시	상사대상자 배수	입주 지정기간	심 제출기간	진행상태	본인신청여부
2020070008	2020.07.05. 테스트	2020/07/05	2020-07-05 00:00:00	2020-07-05 07:40:00	1	30	1	공	Y

- ① 직접배정 신청현황관리 화면에서 “본인신청여부” 체크
- ②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신청하신 공고가 표시됩니다
- ③ 조회 된 공고에서 본인신청 여부란 “Y” 클릭하시면 입주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 6. "소명자료 제출" 버튼 클릭

- 소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입주신청서 상단에 "소명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접배정 신청등록

심사 1 소명자료제출

접수번호	2020070500003	공고번호	2020070008	공고명	2020.07.05. 테스트
공고일자	2020/07/05	신청시작일시	2020/07/05 00:00	신청종료일시	2020/07/05 07:40
입주지정기간	입주자선정일로부터	30	일	공고진행상태	공고심사
심사서류 제출기간	심사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	일		
소명서류 제출기간	소명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	일	보증금 및 월세비율	보증금 100%/월세 0%

모집공고 단지 \* 임대조건은 계약제결시 변경 가능(단, 월세 30% 이상을 적용하여 가점을 받은 경우 월세를 상향하는 조건으로만 변경 가능) (단위: m)

단지명	주택량	전용면적	(주거)공급면적	모집세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본인신청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 상계	22	49.94	19.31	1	145,530,000	0	Y

- ① 입주신청서 우측 상단의 "소명자료제출" 클릭하시면
- ② 신청자가 소명해야 할 물건은 "소명대상여부"에 "Y"로 표시됩니다  
※ "N"으로 표시된 물건은 소명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별 화면에 나타나는 국토부 회신 자료는 예시입니다. 본인이 소명해야 할 물건을 확인하시고 이 화면에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파일 추가 후 정상 업로드 여부 확인바랍니다.

- ③ "소명서류첨부" 란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제출

국토부 회신 자료

순번	소명대상여부	물건지주소	우편번호	면적(m <sup>2</sup> )	취득일	양도일	용도 등
1	Y	경기도 경기시흥시 정왕동 1772-6 시흥배곧신		84.99			아파트
2	Y	경기도 경기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2725-0 평택		55.97			아파트
3	Y	서울특별시 서울시종로구 평창동 일반 329-2	03-017	120.33	2000-11-06		연립주택
4	N	경기도 경기평택시 동삼동 평택 자이더익스프		84.54			아파트

제출요청일 2020-07-15 제출기한 2020-07-18

소명서류첨부

파일명	파일크기	등록일자

## 7. "소명자료" 파일 제출

순번	소명대상여부	물건지주소	우편번호	면적(㎡)	취득일	양도일	용도 등
1	Y	경기도 경기시흥시 정왕동 1772-6 시흥배곧신		84.99			아파트
2	Y	경기도 경기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2725-0 평택		55.97			아파트
3	Y	서울특별시 서울시종로구 평창동 일반 329-2	03-017	120.33	2000-11-06		연립주택
4	N	경기도 경기평택시 동삭동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		84.54			아파트

파일명	파일크기	등록일자
1.경기시흥시 정왕동 물건 소명자료.pdf	62KB	2020/07/15
2.경기평택시 고덕면 물건 소명자료.pdf	62KB	2020/07/15

- ① 소명대상 물건의 순번대로 소명자료를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소명서류를 등록합니다
- ② 소명대상 물건의 소명자료를 모두 등록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순번	소명대상여부	물건지주소	우편번호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용도 등
1	Y	경기도 경기시흥시 정왕동 1772-6 시흥배곧신					아파트
2	Y	경기도 경기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2725-0 평택					아파트
3	Y	서울특별시 서울시종로구 평창동 일반 329-2	03-0				연립주택
4	N	경기도 경기평택시 동삭동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					아파트

파일명	파일크기	등록일자
1.경기시흥시 정왕동 물건 소명자료.pdf	62KB	2020/07/15
2.경기평택시 고덕면 물건 소명자료.pdf	62KB	2020/07/15
3.서울시종로구 평창동 물건 소명자료.pdf	62KB	2020/07/15

-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예" 버튼을 누르시고
- ④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명자료제출은 완료 됩니다
  - 무주택소명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여, 물건별로 소명양식과 소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하나의 스캔파일(PDF)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 7. 1.) 이후 발급된 서류를 기한 내 제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시스템에 업로드 된 서류만 소명서류로 인정됩니다. (메일, 팩스 등 직접 발송자료 불인정)
- 지정된 파일형식 외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였거나 스캔불량 등으로 인한 책임(파일 열람불가 및 육안 확인불가 등)은 신청자 본인에 귀책됨을 알려드립니다.

## 8. 소명서류 삭제

소명자료 제출
저장

국토부 혁신 자료

순번	소명대상여부	물건지주소	우편번호	면적(m <sup>2</sup> )	취득일	양도일	용도 등
1	Y	경기도 경기시흥시 정왕동 1772-6 시흥배곧신		84.99			아파트
2	Y	경기도 경기평택시 고덕면 여업리 2725-0 평택		55.97			아파트
3	Y	서울특별시 서울시종로구 평창동 일반 329-2	03-017	120.33	2000-11-06		연립주택
4	N	경기도 경기평택시 동삼동 평택 자이더익스프		84.54			아파트

제출요청일: 2020-07-15      제출기한: 2020-07-18

소명서류첨부

파일명	파일크기	등록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경기평택시 고덕면 물건 소명자료.pdf	62KB	2020/07/15	다운로드
<input type="checkbox"/> 3.서울시종로구 평창동 물건 소명자료.pdf	62KB	2020/07/15	다운로드

삭제

- ① "소명서류첨부"의 소명서류 삭제하시려면 등록 된 파일의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고
- ② "삭제" 버튼을 클릭 후 저장을 누르시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 ③ 삭제 후 새로운 증빙서류를 첨부하실 때는 "7. 소명자료 파일 제출"으로 돌아가서 다시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9. 주택소유자 소명 양식

- 붙임 파일 참조

## 주택소유자 소명 양식

신청자 성명	(서명)	생년월일	
신청단지 (주택형)		소명대상 물건지 소유자	
소명대상 물건지 주소			
<input type="checkbox"/> 위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은 <b>본인 및 배우자</b> 소유 주택임에 따라 <b>소재지 유주택자임</b> 을 확인합니다. (입주불가)			
<input type="checkbox"/> 위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은 임대주택 신청 <b>소재지 외 주택</b> 입니다. (소재지무주택으로 신청하신 경우 한해 별도 소명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위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은 양도 (     년     월 소유권 이전 완료) <b>완료</b> 된 사항임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위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b>무주택임</b> 에 따라 해당 <b>소명자료를 제출</b> 합니다.			

해당 여부	구 분 (무주택 인정가능 사유)	소명위한 제출자료 목록
<input type="checkbox"/>	상속으로 주택의 <b>공유지분</b> 을 취득한 경우 ☞ 소명요청일 <b>3개월</b> 이내 처분 후 증빙자료 공단 제출 필요	
<input type="checkbox"/>	<b>개인주택사업자</b> 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한 경우 ☞ 소명요청일 <b>3개월</b> 이내 처분 후 증빙자료 공단 제출 필요	
<input type="checkbox"/>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b>개인사업자</b> 가 그 소속 <b>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b>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b>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b>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b>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b> 또는 <b>분양권</b>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b>폐가</b> 이거나 주택이 <b>멸실</b> 되었거나 <b>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b> 되고 있는 경우 ☞ 소명요청일 <b>3개월</b> 이내 처분 후 증빙자료 공단 제출 필	
<input type="checkbox"/>	<b>무허가건물</b>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b>소유</b> 하고 있는 경우. ☞ <b>건축 당시 법령에는 적법한 건물임</b> 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input type="checkbo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b>남은 주택을 선착순</b> 의 방법으로 <b>공급받아 분양권</b>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nput type="checkbox"/>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A→B)받은 <b>분양권</b> (단, A가 B와 한번이라도 세대원이었던 경우 인정불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 무주택 소명은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주택에 따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주택사업운영규정』 근거하여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지원자 본인"이 무주택을 증명하는 절차로 본 양식은 소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양식입니다.

별도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자료로 객관적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명합니다.

\* 공단은 소재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임에 따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 2항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